

# 건설VE전문가(CVP) 재인증에 관한 규정

재정 2012. 01. 27  
일부개정 2012. 09. 25  
일부개정 2012. 11. 26  
일부개정 2015. 06. 02  
일부개정 2015. 12. 02  
일부개정 2015. 12. 16  
일부개정 2016. 07. 27  
일부개정 2017. 05. 31  
일부개정 2019. 03. 14  
일부개정 2020. 05. 2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VE전문가의 재인증을 통하여 VE전문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련근거)**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한국VE연구원 정관 제26조의 1항(특별위원회)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건설VE전문가”(이하 ‘CVP’이라 한다)라 함은 한국VE연구원 등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VE전문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② “재인증”이라 함은 CVP자격을 취득하고 4년경과 시마다 VE관련 활동내역(프로젝트수행실적, 교육이수, 강의활동 등)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CVP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자격의 정지”라 함은 CVP 자격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자격을 재인증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됨을 말한다.

## 제2장 인 증

**제4조(인증 조건)** CVP는 “VE 실무 수행 경험 부문”, “VE 관련 교육이수 부문”, “VE 관련 강의/저술 부문”을 고려하여 본 연구원의 재인증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 ① "VE 실무 수행 경험 부문"의 실적은 CVP의 자격취득 이후 VE 관련 영역의 수행실적에 한정한다.
- ② "VE 관련 교육이수 부문"의 실적은 VE 관련 교육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타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VE 관련 강의/저술/발표/활동 부문"의 실적은 VE 관련하여 타인에게 강의를 하거나, 논문투고/발표, 저술, 참여 등의 활동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제5조(신청자격)** CVP 재인증자격은 다음 각 항 모두를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VE 실무 수행 경험 부문 : 총 **8점** 이상.
  - A. VE 관련 프로젝트 1건당 2점.
  - B. 한국VE연구원에서 실시하는 VE 실습 프로젝트 1건당 2점.
  - C. 대학(원) 정규과목으로 VE 관련 강의를 하는 경우, 1년에 1건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1건 수행한 것으로 인정.
- ② VE 관련 교육이수 부문 : 총 **10점** 이상.
  - A. VE 관련 공인된 교육(건설기술자 직무교육 등) : 1점/(2시간 당).
  - B. 건설 관련 교육 중 VE 포함 교육 : 1점/(4시간 당).
  - C. 한국VE연구원 재인증 직무교육 : 1점/(2시간 당). 단, 증명서 상에 교육이수 일수 및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시간만 인정.
  - D. 한국VE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식 교육(건설VE전문가 기본과정, 고급과정, 재인증 교육)의 강의 : 1점/(2시간당), 단. 최대 4점까지만 인정.
- ③ VE 관련 강의/저술/발표/활동 부문 : 총 **12점** 이상.
  - A. VE 관련 강의(대학 강의 등) : VE 관련 1점/(5시간 당). 단, 증명서 상에 교육이수 일수 및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시간만 인정.
  - B. VE 관련 발표 및 행사참여
    - (a) 건설 관련 VE 포함 세미나, 포럼 등 공인된 행사(발표 : 0.5점/건, 참여 : 0.2점/건)
    - (b) 건설 관련 VE 포함 대회 등 공인된 컨퍼런스(발표 : 1점/건, 참여 : 0.5점/건)

- (c) VE 관련 세미나, 포럼 등 공인된 행사(발표 : 1점/건, 참여 : 0.5점/건)
  - (d) VE 관련 대회 등 공인된 컨퍼런스(발표 : 2점/건, 참여 : 1점/건)
  - (e)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건설VE 포럼(발표 : 2점/건, 참여 : 1점/건)
  - (f)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VE컨퍼런스(발표 : 4점/건, 참여 : 2점/건)
- C. VE 관련 기고/논문/서적출판(40p이상)
- (a) 기고(신문, 학회지 등) : 1건당 2점
  - (b) 서적출판 : 1건당 5점
  - (c) 논문 : 1건당 5점. 단,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획득점수/저자수]로 계산하여 인정.
- D. VE관련 단체 활동 : 2점/년(단, 최대 8점 부여)

참여구분	인정점수	비 고
회원	0.5점 /년	한국VE연구원 활동에 한함
위원회	1점 /년	
원장단, 분과위원장, 위원장, 이사 등	1.5점 /년	

- E. 건설VE심의위원회 활동 : 공공기관의 자체 심의회의 참여(VE리더, 자문위원 등) 4시간당 1점. 단, 증명서 필히 제출.
  - F. VE 관련 부문 포상(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연구원 등) : 1건당 4점 (단,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VE컨퍼런스에 한 함)
- ④ 위의 신청자격 요건 중 VE관련 강의는 각 항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CVP 재인증위원회)** CVP 재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CVP 재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본 연구원 임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및 산업계의 임직원으로서 VE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 ④ 인증위원회는 재인증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⑤ 인증위원장은 CVP 재인증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인증위원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수료 등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인증 방법 및 절차)** 재인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CVP는 재인증 대상자 공지 후 한국VE연구원으로 재 인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및 심사에 필요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증위원회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여부를 CVP에게 통보한다.
- ③ 최종적으로 재인증 받은 자격자에 한하여 “건설VE전문가(CVP)” 자격증을 발부한다.

### **제 3 장 CVP의 재인증 및 관리**

**제8조(CVP의 재인증)** 제7조의 재인증 방법 및 절차에 따라 CVP로 재인증 받은 자격자는 사무국에서 “건설VE전문가(CVP)”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9조(CVP의 권리)** 제8조에 따라 사무국에 재인증 받은 CVP는 본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VE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CVP의 의무)** 제8조에 의거 CVP로 재인증을 받은 자는 매 4년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자격취득 후 12년 경과 시 3회째 재인증을 받을 경우, 그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4년 마다 “VE전문고급과정” 1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11조(CVP의 재인증)**

- ① CVP의 자격을 재인증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 후 “건설VE전문가(CVP)”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 ② 제출 서류의 결격여부는 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12조(기타 협의사항)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 ② 재인증 대상자의 재인증 일 기준 시점은 "CVP 재인증에 관한 규정"의 확정, 공포된 날로부터 4년을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